

제10조(수당등)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,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,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4. 6. 17  
行政財務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案日字 및 提案者 : 1994年 4月 26日 區廳長提出
- 나. 回附日字 : 1994年 4月 29日 回附
- 다. 上程日字 : 第25回 永登浦區議會(臨時會)第1次 委員會(1994年 6月 15日) 上程議決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總務局長 尹鼎重)

- 가. 提案理由  
지방자치법 개정(법률 제4741호, 1994. 3. 16)에 따라 타집행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함.
- 나. 主要骨子  
○ 동장의 보직을 "5급상당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"에서 "지방행정사무관"으로 변경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

(專門委員 : 趙大顯)

○ '94. 4. 29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개정코저하는 사안이 영등포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2조 제1항의 동장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

이는 94. 3.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 내용에 따라 당연정비조치해야 될 사안이므로 구청장의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審査結果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23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4  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법률 제4741호, 1994. 3. 16)에 따라 타집행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동장의 보직을 "5급상당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"에서 "지방행정사무관"으로 변경

3. 개정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109조

4. 조례(안) : 별첨

5. 참고사항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1항중 "5급상당별정직 또는 일반직5급공무원"을 "지방행정사무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2 조(동장) ① 동사무소에 동장을 두되 동장은 5급상당별정직 또는 일반직5급공무원으로 보한다.	제 2 조(동장) ① ..... ..... 지방행정사무관.....